

『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,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향토생활관에 입사시켜 지역 학생들의 학업분위기를 향상시키고,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출연 개요
 - 대상기관 : 경일대학교
 - 소 재 지 :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
 - 출연예정액 : 200백만원
- 주요 사업
 - 경일대 향토생활관 지원

- 향토생활관 이용 협약 체결 및 20명 입사자격 부여
- 지자체 추천자 생활관비 50% 장학금 지급(5년/년 90만원, 1인당)

○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학생들의 학업분위기 향상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관·학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 기여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교육기본법」 제27조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○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출연 동의안』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지역 학생들의 학업분위기를 향상시키고,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